



美國製藥協會, 對韓규제 촉구 特許保護協定 제대로 준수하지 않아

美國製藥協會(PWA)는 10일 클레이턴 야이더 통상대표에게 韓國 정부가 美國 정부와 맺은 特許保護協定을 제대로 遵守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 韓國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다.

美國 製藥協會는 韓國 정부가 86년8월 체결된 韓·美간 知的所有權協定을 改正, 韓國에서 美國特許製藥品 판매를 금지시키려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美國 정부는 韓國 정부의 特許製藥品保護와 시장개방 약속을 재평가할 때가 되었다고 말했다.

이 서한은 韓國人들은 美國에서 美國人들 처럼 자유롭게 회사를 세울수 있으나, 美國人들은 韓國에서 합작투자를 통해서만 회사설립이 가능하여 기술공개를 요구 받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韓國의 태도를 바꾸게 하는 조치가 취해지지 않

는한 韓·美 무역 문제는 계속 존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소련, 特許制度 대폭 改正할듯 物質特許制度導入등 改革 일환

최근 日本의 日經産業이 보도한 바에 따르면 고르바초프 정권이 추진하고 있는 改革 노선의 일환으로서 소련은 현행 特許制度를 대폭, 改正할 예정이다.

科學技術의 進歩와 研究 結果의 산업적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物質特許制度의 導入등 새로운 特許法을 올해중 制定할 것으로 보인다.

日, 異議理由補充書提出期間단축 現行90日에서 60日로, 1月1日부터 實施

日本特許廳은 在外者에 대한 異議理由補充書提出期間을 현행 90日에서 60日로 단축, 지난 1月1日부터 實施했다.

特許法 第4條의 規定에 의거

직권연장기간단축의 적용 대상은 特許出願 및 實用新案登錄出願이며, 시행일 이전에 出願公告가 되는 出願에 대하여는 종전과 같다. (※)

◆알림◆

공업소유권에 관한 호혜주의 인정

브리티쉬버진아일랜드 국민이 상표출원시 제출한 호혜증명서에 의거 특허법 제40조와 이를 준용하는 상표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브리티쉬버진아일랜드 국민에 대하여 상표에 관

한 권리를 인정(확인일자: 88. 3.4)키로 하였기 이를 통보하

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988. 3. 12

특 허 청 장